



判例教室

国内外 審判 判例

〈XIV〉

編輯室

國內事件

商標登錄 無効判例

〈大法院 第2部 1976. 5. 25. 判決〉

裁判長	大法院 判事	김	용	철
關與判事	"	이	영	섭
"	"	민	문	기
"	"	김	윤	행

1. 事件 : 76후 12, 商標登錄無効
2. 審判請求人(上告人) : 松下電氣產業株式會社(日本) 代表 다니무라 히로조오, 訴訟代理人 辨護士 신 중 훈
3.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 내쇼날푸라스틱株式會社
代表理事 임 채 흥
4. 原 審 決 : 特許局 抗告審判部 1976. 3. 6. 審決, 1974년 再審 7號 審決
5. 主 文 : 이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
6. 理 由 : 審判請求代理人의 上告理由를 본다.

原審은 이 事件 再審事由로서 심판청구인이 主張하는 것은 民事訴訟法 第422條 第1項에 列擧된 어느 사유에도 該當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것의 一部가 심결에 影響을 미칠만큼 重要한 事項에 關하여 판단을 遺脫한 것에 해당한 趣旨로 보여도 이것 또한 分明하지 아니하므로 이 事件의 재심청구를 却下하고 있다.

記錄을 精査하면서 살펴보면 원심이 내린 이와 같은 판단은 正當하고 여기에는 論旨가 여러 모로 攻擊하는 바와 같이 審理未盡, 判

斷遺脫, 理由不備, 探證法則 違背, 法理誤解의 違法事由가 없다.

甲號 各種에 대하여 원심이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 事件의 재심청구에서는 재심사유에 해당할만한 것이 없다고 考하된 터이므로 本案에 들어가서 審判할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關係法官들의 一致된 見解에 따라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上고비용은 敗訴者의 부담으로 한다.

不正競争防止등 請求事件 (下)

〈日本 東京地裁 民事 第29部, 1970.
第12,456號, 1974. 12. 23. 判決〉

5. 判決理由

原告는 訴外 東武興業(株)이 1959年 6月1日 東武鐵道 東上線 上福岡驛 近處의 霞丘園地內에 슈퍼마켓方式의 霞丘店을 열고 그 營業表示로서 東武슈퍼스토아의 名稱을 사용하여 宣傳하였으므로 東武슈퍼스토아의 표시는 적어도 東上線 沿線에서는 1959년말 쯤에는 東武興業(株)의 營業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認識되기에 이르렀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證人 上野邦雄, 同 井上清吾의 各 證言에 따라 1959年 12월1일 東武興業(株) 常盤台店의 開店狀況을 撮影한 寫眞임이 인정되는 甲 第11號證의 1, 同 1961년쯤 同店을 촬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同 號證 2, 證人 上野邦雄, 同 井上清吾, 同 泉好滿의 各 證言을 綜合한 바 원고 主張의 霞丘店은 東武興業(株)의 第1號店으로서 개점되어 1960년 7월쯤 第2號店으로 上野台店이, 1960년 12월1일에는 第3號店으로서 常盤台店이 각각 개점되었으나 常盤台店의 개점 당시의 점포 명칭을 꼭 東武슈퍼스토아 常盤店으로서 統一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그외에 슈퍼마켓常盤店이란 표시도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인정을 뒤집을 證據는 없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가 주장하듯이 東武슈퍼스토아의 명칭은 1959년말 쯤에는 東武(株)의 營業을 표시하는 것으로 東上線 沿線에서 널리 인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만하다. 다만 1960년

2월쯤에도 東武興業(株)은 자기의 점포표시를 東武슈퍼스토아○○店으로 統一하지는 않았으므로 하물며 남에게 東武슈퍼스토아의 표시가 그 회사의 營業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원고 主張의 霞丘店이 1959년쯤에 東武슈퍼스토아의 표시를 사용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證人 上野邦雄의 證言중 이에 따른 것 같은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그 證言의 確실한 記憶에 根據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그 대로는 措信할 수 없으며 그외에 이 사실을 確信시킬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證人 泉好滿의 證言에 의하면 이 霞丘店은 開店 當時는 슈퍼마켓霞丘店이란 표시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推認된다.

證人 水野貞夫의 證言에 따라 眞正으로 成立되었음이 인정되는 乙 第1號證의 證人 水野貞夫, 同 紫田煉兒의 各 證言과 피고회사 대표자 關口茂八을 尋問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訴外 東武食品工業(株)(以下 東武食品)은 1951년쯤부터 東京都校橋區上校橋 2丁目的 東武鐵道 東上線 上校橋驛附近에 面積 80坪정도의 점포를 所有하고 그 가운데 약 40평을 사용하여 自身이 食料品, 化粧品, 雜貨를 판매하고 그외의 부분은 他人에게 魚類, 乾物類 등의 食料品 판매를 위해 賃貸한 뒤 그 점포 전체에 東武百貨店이란 이름을 붙

여 營業을 하고 있었다.

당시 東上線 沿線에 그와 같은 마케트形式의 점포에 東武라는 명칭을 붙인 곳은 없었다. 1960년 5월 쯤 東武食品은 그 業務의 확장에 따라 종래의 점포로는 비좁게 되어 그 점포를 道路를 사이에 둔 상대편에 새로히 점포(가로 5間, 세로 7칸)을 개설하여 그 점포에 東武스토아라는 표시를 사용하여 鐵物類를 主로한 雜貨류 등을 팔고 있었다.

피고회사는 1965년 10월5일에 設立(本件記錄添附 被告會社의 商業登記簿謄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된 加工食品, 鐵物雜貨, 家庭用器具 및 電氣器具의 판매 목적으로한 資本金 2,000萬圓의 회사(이 사실은 當事者間에 異議없음)이나 1965년 12월1일에 東武食品에서 前記 東武百貨店 및 東武스토아에 관한 營業전부를 양수하고 그와 동시에 東武스토아의 표시사용을 承繼하여 1967년쯤 元 東武百貨店으로 경영하고 있던 場所에 새로히 3層建物을 지어 그 건물에도 東武스토아의 표시를 사용하여 營業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이 사실을 轉覆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하는 東武스토아 표시는 원고가 주장하는 東武슈퍼스토아 또는 東武스토아의 표시와 類似하나 이 東武슈퍼스토아 또는 東武스토아가 東武興業(株) 또는 원고회사의 營業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해도 그 時期는 前記 認定事實로 미루어 빨라도 1960년 12월1일 이후의 일이며 東武食品은 그 이전에 東武스토아의 표시를 사용하고 더우기 그 사용은 善意임이 인정될 뿐더러 피고는 東武食品에서 그 營業과 더불어 그 표시의 사용이 원고의 權利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피고회사대표자 關口茂八